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하에 신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원 발전을 위해 지도적 인격 완성과 창조적 능력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 **제2조** (입학전형방법) 입학지원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 제3조 (응시자격)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박사과정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개정 2021.9.9.>
 - ④ 직원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1.9.9.>
- 제4조 (응시절차)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석사 및 통합과정
 - 1. 입학원서
 - 2. 졸업(예정)증명서
 - 3. 학사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
 - 4.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
 - ② 박사과정
 - 1. 입학원서
 - 2. 학사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예정)증명서
 - 3.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
 - 4.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
- 제5조 (전공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의 내규에 따라 학과 주관 하에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 (합격사정) 합격사정은 학과별 사정과 대학원위원회 사정으로 나눈다.
- 제7조 (학과별 사정) ① 각 학과의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과 회의를 통해 학과별 3인 이상 또는 재적교수 과반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학과별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전공)의 주임교수로 한다.
 - ② 각 학과에서는 전공시험성적, 하위과정의 성적, 면접성적 및 기타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한다.
- **제8조** (대학원위원회 사정) 각 학과에서 합격 제청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 ① 대학원위원회는 학과별 또는 계열별 재적인원, 교수 수 등을 참작하여학과별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합격 제청된 자를 입학사정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확정한다.
 - ③ 학과별 사정에서 합격 제청된 자라도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정할 수 있다.
- **제9조** (외국인학생 입학) 외국인학생은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시행여부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편입학

- 제11조 (전형방법) 편입학전형은 신입학전형에 준한다.
- 제12조 (시행여부) 편입학생 모집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3조** (시행일자) 편입학의 전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3. 6. 16.>
- **제14조** (모집인원) 편입학은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 **제15조** (응시자격)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1차학기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대학원의 편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6조 (응시절차) ① 대학원의 편입학 전형의 응시 및 사정절차에 관해서는 제3 조로부터 제8조까지의 일반전형 규정에 따른다.
 - ② 편입학 지원자는 전적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4장 등록

제17조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나눈다.

- 제18조 (정규등록) 각 과정의 재학생이 설강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규 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석사과정과 박 사과정에서는 4학기, 통합과정에서는 8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제43조의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졸업자, 제43조의 2의 [별표 2] 에 해당하는 수업연한 단축학과(전공)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3. 26.>
- 제19조 (연구등록) 각 과정의 재학생이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한 후에도 연구실험 이 진행중 이거나 학위논문을 작성중에 있는 학생은 연구등록을 해야한다.
- **제20조** (연구과정 연구생의 등록) 연구과정의 연구생이 각 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는 정규등록을 해야한다.
- **제21조** (등록금) ① 대학원생은 정규등록시는 수업료를, 연구등록시는 연구등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업료는 학기별로 납부한다. 다만, 정규등록 이후의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3. 26.>
- 제22조 (재입학생의 등록) ①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재입학한 정규 등록자는 최초 입학일 기준의 제18조(정규등록)를 따른다. 단, 연구등록 대 상자는 재입학일 기준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1항 이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3조 (등록금 반환 및 이월) ①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금반환내규」를 따른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해 주되, 이후의 경우「등록금반환내규」에 의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3. 12. 8.>

제5장 교과과정 및 수강

- 제24조 (수업일수) ① 수업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3. 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25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 단위로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 2. 20>
- 제25조 (교과목)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 1. 전공과목 :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 2. 전공간 공통과목(이하 "전공공통과목"이라 한다): 한 학과가 2개 이상의 전공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학과의 학생들이 이수하면 전공과목 으로 인정받는 교과목을 말한다.
 - 3. 공통과목 : 대학원에서 개설 및 지정하여 각 전공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 4. 일반과목 : 전공과목 및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을 말한다.

- **제26조** (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이며,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 ②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1학기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7조 (교과과정) ① 대학원의 석사·박사·통합과정에는 각각 전공과목과 일반 과목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편성한다.
 - 1. 석사과정 3과목 이상, 박사과정 2과목 이상, 통합과정 5과목 이상
 - 2. 한 학과가 2개 이상의 전공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공과정별로 전공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 3. 위의 제1호에 의해 설정한 전공과목은 다른 교과목의 이수로 대체할 수 없다
 -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에 따른 특수한 교과목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 각 학과별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각 학과에서는 사회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트랙을 구성·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 8. 31.>
- 제28조 (교과목의 설정) 교과목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설정한다.
 - 1. 교과목은 매 2년마다 각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교과과정 개편시 과거 4년간 미개설 교과목은 등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교과과정의 변경) 설정된 교과과정은 결정된 후 2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0조 (전공과정의 교과과정) 2개 이상의 전공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학과에서 각 전공과정의 교과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은 1개 학과와 동등하게 한다.
- 제31조 (교과목 개설) 주임교수는 설강할 교과목을 개설 직전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교과목의 추가개설 및 변경은 수강신청 개시 이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제32조 (수강생수) ① 수강생이 공학계열 5명, 이학계열(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해양, 통계) 3명, 이학계열(의류, 식품영양, 간호) 및 나머지 타 계열 2명 미만인 설강 교과목은 폐강한다. 단, 의학계열의 경우와 학과의 정규등록 재학생수가 10명 미만이고 지도학생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원어강의는 공학계열의 경우 수강생이 3명 미만인 설강 교과목은 폐강하고, 타 계열은 제1항의 폐강기준에 따른다.
- **제33조** (강의담당 자격)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본교의 전임교원
 - 2.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외의 인사

- 3. 학과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인사
- **제34조** (강의담당 학점수) ①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1인의 담당 교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개정 2023. 12. 8. 2024. 3. 26.>
 - 1.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공통과목 및 핵심교과목
 - 2. 정원외 전형 전담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 3. 수업연한 단축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 ② 다만, 타 학과강의를 담당하거나 학과간 협동과정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간 9학점까지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 ③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8, 2024, 3, 26.>
- **제35조** (수강자격 및 취득학점) ①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대학원의 각 과정에 설강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② 매학기 수강학점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초과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 1.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 이내
 - 2. 학부과정의 지정과목 이수자의 경우 3학점 이내
 - 3. 전문간호사과정 입학생의 경우 3학점 이내
 - ③ [별표 2]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의 수강학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4. 3. 26.>
- **제35조의2** (재수강)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31.>
 - 1. 학수번호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2.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 ② 취득학점이 C+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재수 강은 과목당 1회에 한하나,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8. 31.>
 - ③ 재수강 신청가능학점은 학기별 3학점 이내, 졸업할 때까지 총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전공필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8. 31.>
 - ④ 재수강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선취득한 해당과목의 학점을 삭제하고 (학적부에 "재수강삭제"표시)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부여하며, 재수강 과목의 최고평점은 A0로 한다. <신설 2022. 8. 31.>
- **제36조** (수강신청 및 변경절차)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 대학원에서 정하여 공고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 **제37조** (과정별 수료 학점수) ① 학생이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학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 전공과목 15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다만, 간호학과 의 전문간호사과정은 전공과목 37학점 이상
 - 2. 박사과정 :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포함한 36학점 이상
 - 3. 통합과정: 전공과목 33학점 이상을 포함한 60학점 이상
 - ② 학과(전공) 또는 지도위원회는 해당학생에게 전공과목 이외에 타학과, 타전공의 교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8조 (타 대학원 취득 전공학점 인정) ① 본교의 신입생이 국내·외 타 대학원 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 전공과 동일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다음 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B_0 이상 이어야 한다.

구분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6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
통합과정	30학점 이내	15학점 이내

- ②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학점은 9학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내 대학원의 경우 한 학기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대학원간 별도의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 ③ 재학 중 본교와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의 인정 기준은 제7장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따른다.
- 제39조 (지정과목)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 또는 전과한 자가 학사 및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학과에서 정하는 지정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입학생 또는 전과생 : 9학점 이내
 -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생 또는 전과생 : 15학점 이내
 - ② 지정과목으로 학부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성적(P)을 부여하며,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0조** (상위과정의 학점인정) ①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 대학원 입학 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B₀ 이상의 등 급을 받은 학점이어야 한다.<개정 2022, 12, 13, 2024, 3, 26, >
 - 1.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본 대학원 교과목은 12학점 이내에서 석사과정 취 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 은 교과목은 석사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 2.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은 제117조(학위수여 자격)를 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6학점 이내에서 박사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41조** (타전공과목 이수) 각 학과(전공) 또는 지도위원회는 해당학생에게 전공과 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 (수강학점 제한) ① 동일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석사과정을 제외하고 9학점, 통합과정에서는 18학점을 초 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지정과목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개 정 2022, 11, 16.>
 - ② 동일교수의 학점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5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된 학생은 제32조의 폐강 기준인원 산정에서제외한다.<개정 2022, 11, 16, 2024, 3, 26, >
- 제43조 (수업연한 단축) ① 재학 중 논문 및 학술활동으로 [별표 1]의 연구업적 인정기준에 의거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자가 수업연한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대학원 통합학칙」 제19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
 - ② 공동저술에 따른 저자별 점수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도교수는 공동저자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20.>

구분	제1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1인	100%	_
2인	80%	40%
3인	60%	30%
4인	50%	25%
5-7인	40%	20%
8인 이상	30%	100%/n
11인 이상	20%	100%/11
W 0 1 H	마 하이 시키게 되시다 =	나가 하나 스크

※ n은 논문 및 기타 업적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로, 총 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 ③ 박사 및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더하여 제96조(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의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4. 3. 26. >
-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을 위한 신청서와 연구실적자료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출일 현재까지 소정의 학술지에 게재 예정인 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연구업적물에 「인하대학교」 소속임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관으로 명시된 경우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⑥ 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석사·박사 통합 연계과정의 경우 연구업적점수와 관계없이 수업연한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 제43조의2 (학과(전공)의 수업연한 단축) ① 학과 또는 전공에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단축하여 설치·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 3. 26.>
 - ② 단축을 허가한 학과(전공)은 [별표 2]에 따른다.<신설 2024. 3. 26.>
 - ③ 본 조의 수업연한 단축은 제43조와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43조의 연구업적 요구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24. 3. 26.>
- 제44조 (현장실습교과목 및 논문연구교과목)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산학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에서 전공 관련 실무 교육 및 실습에 참여하는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21.9.9.>
 - ② 논문연구교과목은 학생이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과제를 지정받아 수행하는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21.9.9.>
 - ③ 현장실습교과목과 논문연구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9.>
 - 1. 현장실습학점과 논문연구학점을 합하여 재학 중 다음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과정	구분	학점
석사	-	3
박사 · 통합	인문사회,예체능계열	6
리사·우맙	공학,이학,의학계열	9

- 2. 현장실습교과목과 논문연구교과목을 합하여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과의 요청을 받아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9.9.>
- ⑤ 논문연구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9.>
- ⑥ 현장실습교과목은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며,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 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9.9.>

제6장 부전공

- 제45조 (신청범위) 「대학원 통합학칙」제17조에 따라 각 과정의 재학생은 소속학 과 외 타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제46조** (이수신청 및 선정)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부전공이수신청서를 부전공 학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전공 학과(전공)에서는 부전공 이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주임교수는 허가 여부를 판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47조 (이수요건)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전공 학과의 학위요건 에 추가하여, 부전공 학과(전공)의 과목 중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통합과정은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과정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다.
- 제48조 (학위논문) 부전공 이수 학생은 주전공 학과의 학위논문 이외에 별도의 학 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49조** (지도교수)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전공 지도교수 외에 부전공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50조** (이수인증) 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사항을 학적기록부에 등재하고 학위증명서에 표기한다.
- **제51조** (수강제한조치)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특정 학과(전공)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수용능력 등을 참작하여 제 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2조 (신청취소) ① 학생이 부전공과정 이수 중 부전공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전공취소신청서를 부전공 학과(전공)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전공과정 취소가 결정된 경우 학생의 부전공 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하고 부전공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제7장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1절 총칙

- 제53조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동학위(Joint Degree)"란 본 대학원과 협약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 2. "복수학위(Double Degree)"란 본 대학원과 협약 대학원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 **제54조** (학위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제116조(학위수여 자격)와 대학간 협약서에 명시된 학위수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절 본 대학원생의 협약 대학원 수학

- **제55조** (지원자격 및 선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절차는 대학간 협약서에 따른다.
- 제56조 (수학기간 및 학적)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 명시되었거나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졸업학기에는 협약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2. 8. 31.>
- 제57조 (학점교환 및 인정)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학생은 협약 대학원에서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본 대학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협약 대학원 성적증 명서 등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 ③ 협약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공동학위과정으로 수학한 경우는 학점 및 평점을 모두 인정한다.
 - 2. 복수학위과정으로 수학한 경우는 협약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 명칭을 학적부에 등재하되, 본 대학원의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친 후 대체인정한다.
 - 3. 복수학위과정으로 협약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P(Pass)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학점인정 범위는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따른 다.
- 제58조 (학위논문)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본 시행세칙 제16장 학위 논문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제출한 논문은 본 대학원의 학위수 여 조건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 제59조 (등록 및 수업료) ① 본 시행세칙에 의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 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해당학기 본 대학원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 야 한다.
 - ② 협약에 의하여 협약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본 대학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협약 대학원에 수업료를 납부하는 경우본 대학원의 수업료 납부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제3절 협약 대학원생의 본 대학원 수학

제60조 (수강신청, 취득 학점, 학점인정) 수강신청, 취득 학점 및 학점인정은 본 대

학원통합학칙에 따른다.

- 제61조 (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협약 대학원생의 지도 및 관리는 협약 대학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 ② 협약 대학원생은 본 대학의 복지시설을 본 대학원생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62조 (수학기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협약 대학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3조 (등록 및 수업료) ① 협약 대학원생은 본 대학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상호 협약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본 대학원에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64조** (준용) 본 시행세칙 및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관련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학위과정 전환

- **제65조** (대상학과) 학위과정 전환 대상학과는 통합과정이 개설된 학과와 협동과정으로 한다.
- 제66조 (학위과정 전환 절차 및 신청 자격)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전환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전환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석사 3차 또는 석사 4차 진입 예정자
 - 2. 석사 3차 진입예정자는 2차까지의 취득학점이 12학점이상, 석사 4차 진입예정자는 3차까지의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 3.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 4.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하는 자
- 제67조 (등록) ① 학위과정 전환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9조(등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학위과정이 전환되는 학생의 등록학기는 석사과정 진입예정 학기를 통합과정의 학기로 인정한다.
- **제68조** (학점인정) 석사과정에서 수료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장 성적

- 제69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25조에 따라 등급과 평점을 반영한다. 논문연구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 학습태도 등의 평가기준을 반영한다. 다만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 ② 학생이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과목을 지정기간 중에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20.>
 - ③ 특별히 대학원에서 지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통과(P)의 성적을 줄 수 있으며, P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 및 총 성적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않는다.
- 제69조의2 (수업 및 성적 자료 등 보관) 담당교수는 출석부, 출석인정서, 평가기준이 포함된 강의계획서, 평점표를 학기종료 후 대학원으로 제출하며, 답안지 등 성적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담당교수가 보관한다. 대학원과 담당교수는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보관한다. <신설 2022. 5. 13., 2022. 12. 13.>

제10장 휴학

- 제70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1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12. 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 분의 1이상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신설 2023, 12, 8.>
 - ③ 휴학기간은 통산 석사과정 4개 학기, 박사과정 6개 학기, 통합과정은 8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임신·출산·육아 및 병역의무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다.<개정 2022. 8. 31.>
 - ⑤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이하 "창업휴학"이라 한다)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창업휴학 신청 절차는 다음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20.>
 - 1. 창업휴학은 창업지원단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창업휴학의 기간은 1회 신청 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장 전공의 변경

- **제71조** (전과) ① 전과는 동일계열 내에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3차학기 이 내, 통합과정의 6차학기 이내에서 허가한다.
 - ② 학과 및 협동과정 학과간의 전과는 참여교수가 소속된 학과로 제한하며, 이 경우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3차학기이내, 통합과정의 6차학기 이내에서 허용한다.
 - ③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 및 계열에 관계없이 지도교수의 소속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 1. 지도교수의 학과가 변경된 경우
 - 2. 지도교수의 소속이 학과간(계열간) 협동과정을 겸직하는 경우
 - ④ 전과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과 이후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72조 (전과 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 1개월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전과 신청서
 - 2. 성적증명서
 - 3. 신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서
 - 4. 학점인정서

제12장 연구과정

- 제73조 (연구생입학) ① 대학졸업 이상의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는 경우에 연구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연구과정 입학생 전형에는 본 시행세칙 제2장 입학을 준용한다.
- 제74조 (수업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75조** (수강 및 학점인정) 연구과정에서는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학기당 9학 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제76조** (성적증명서)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한 연구생은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증 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13장 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 제77조 (주임교수의 정의 및 직무) ① 주임교수라 함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12조, 제15조에서 정하는 각 과정에서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의미한다.
 - ②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교과목 편성 및 개설, 지도교수의 제청 및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 **제78조** (전공주임) 2 이상의 전공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과에서는 각 전공과정마다 전공주임 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전공주임 교수는 당해 전공과정에서 주임교수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9조 (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1. 본교 정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2. 인하한림교수
 - 3. 국내외 타대학 전임교원
 - 4. 본 대학원과 협동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소 또는 산업체 연구기관의 상임연구워급 인사
 - 5. 논문 주제와 관련된 10년 이상 경력의 산업체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자<신설 2020. 12 17.>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위논문 표절 등 부정행위 발생의 사유로 학위 수여가 취소된 학생의 지도교수(공동지도교수 포함)는 학위취소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신규 학생의 지도를 할 수 없다.<신설 2022, 8, 31.>
- 제80조 (지도교수 위촉) 주임교수는 첫 학기중에 학생의 의견 및 수학하려는 전공 분야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고 대학원장이 이 를 위촉하다.
- 제81조 (지도교수 변경) ① 이미 정해진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를 할 수 없거나 퇴임 등의 경우에는 2개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의 교수가 본교에 없으면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타교의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82조 (지도교수 직무)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담당 학생의 학사지도
 - 2. 담당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 3. 지도위원회 주관
 - 4. 담당학생의 진로지도
- 제83조 (지도위원회 구성) 지도위원회는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가 그 위원장이 된다.
- 제84조 (지도위원 자격) ① 지도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교의 전임교원
 -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외인사
 - ② 지도위원중 1인은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의 교원으로 할 수도 있다.

- ③ 교외인사의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해야 하며 그 수는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85조** (지도위원 위촉)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86조 (지도위원회 직무) 지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담당 학생이 이전 학위과정 또는 이전 학기에 이수한 수강과목 및 성적을 검토하고 이후 수강과목 선정 지도
 - 2. 담당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과목수 지도
 - 3. 담당 학생이 타대학원 또는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추천
 - 4. 담당 학생의 연구계획 수립, 연구 수행 및 논문작성 상담 및 감독
 - 5. 담당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제14장 대학원위원회

- 제87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 단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88조** (회의소집)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통합학칙」에 의거 대학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89조 (의사정족수)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한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90조** (회의록)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4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5장 자격시험

- 제91조 (구분) 「대학원 통합학칙」제8장의 자격시험은 전공시험, 중간전공시험, 영어시험으로 구분한다. 각 과정의 재학생은 전공시험에 합격해야 해당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과정 재학생은 중간전공 시험에 합격하여야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제92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전공시험: 석사과정의 경우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18학점 이상, 통합과정의 경우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 중간전공시험 : 통합과정 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93조 (시험시기) 전공시험과 중간전공시험은 매년 3월 및 9월 중에 실시한다.

제94조 (시험세부내용) 전공시험 및 중간전공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과 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95조 (합격인정) ① 아래와 같은 영어공인시험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영어시험 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 분	합격인정점수
	PBT	540점 이상
TOEFL	CBT	207점 이상
	IBT	76점 이상
TOEIC	정규TOEIC	700점 이상
TOEIC	교내모의TOEIC	100.5 al.9
N	EW TEPS	327점 이상
	LEVEL 1	50점 이상
G-TELP	LEVEL 2	64점 이상
	LEVEL 3	85점 이상
IELTS		6점 이상

- ② 대학원에서 설강한 영어논문작성법 교과목은 학점 비인정과목으로 P(Pass)를 취득하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22. 5. 13.>
- ③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서 설강한 영어논문작성법 교과목 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경우, 영어시험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성적은 B이상을 취득하여야 영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신설 2022. 5. 13.>
- ④ 제1항 이외의 공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⑤ 제1항의 교내모의TOEIC 성적은 지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만을 인정하다.
- ⑥ 대학원에서 지정한 교내 기관의 영어관련 특별과정 강좌를 이수한 자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23. 12. 8.>
-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영어권 국가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영어권 국가 국적 소지자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2. 11. 16.>
- ⑧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위 각항의 요건을 만족한 자는 박사과정 영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⑨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180조(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를 충족하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6장 학위논문

-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6.15.>
 -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2.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3.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해 관련학회 또는 대학원 논문발표회에서 공개발표 를 마친 자
 - 4. 대학원에서 개설한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항 이외에 각 학과에서 설정한 연구실적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경우 국내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국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내규를 인정화산율로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③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실적에는 인하대학교 소속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재입학한 자는 재입학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제97조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매학기 실시하며, 제출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제98조 (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 표절검증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9조 (논문접수) 논문심사 대상학과는 내규에 따라 심사논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100조 (논문심사료 반환)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논문의 접수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제98조(구비서류)의 제출서류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개정 2024. 3. 26.>
 - ② 논문심사대상자가 논문심사 개시 이전에 논문심사 진행이 어려워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논문심사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1조** (심사위원 추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위원회는 석사의 경우 3인, 박사의 경우 5인 이상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주임교수에게 추천한다.
- **제102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지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부위원장이 된다. 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의 3인 이하에 대하여 심사 부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단, 학과간 협동과정 소속의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이 있을 경우 최대 학생 4인의 심사 부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1.4.1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제2항의 규정 인원수를 초과한 지도학생에 대하여 심사 부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신설 2022, 8, 31.>

- ④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이외 국내외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를 2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단, 학문특성상 특수한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심사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 1인은 한 학기 3편을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다.<개정 2021.4.15.>
- ⑤ 심사위원중 과반수는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인사라야 한다.
- **제103조** (심사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위촉하거나 그 결정권한과 위촉사항을 지도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장은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며,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의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심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 제104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 제105조 (심사 정족수) 논문심사는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
- **제106조** (심사) 논문의 심사는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심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1. 첫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하며,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통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인용문헌, 역본, 모형, 표본 등과 기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2. 두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과 논문제출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번째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내용에 대한 통일된 수정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명한다. 다만, 외국소재 대학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교외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
 - 3. 본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에서 지적 및 수정 보완을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한다. 공개심사후 제 수정보완사항과 논문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 고한다.
- **제107조** (심사기간) 학위청구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는 심사위촉일로부터 석사 의 경우 1개월 이내, 박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108조 (심사 중단) 예비심사 결과 학위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학과의 요청에 따라 심사료는 학생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109조**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공개로 진행되는 본심사에서 본심사와 동시에 수행한다.
- 제110조 (논문 및 구술시험 판정)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심사평가는 가·부로 하며 석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의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이 가로 평가할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111조 (박사학위 논문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표하였거나 교육부 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2조 (논문양식) 합격된 논문의 크기는 4×6배판(188mm×257mm)으로 하며, [별지 양식 1, 2, 3] 에 준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 [별지 양식 2] 대신 [별지 양식 4] 에 따라 영문속표지를 넣을 수 있다.
- 제113조 (논문제출) 완성된 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로 정석학술정보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4조 (학위논문 제출 연장) ① 학위논문 심사 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 학기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 1. 심사위원회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이 요구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2. 대학원통합학칙 제42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학위논문 제출 연장이 승인된 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등록금 납부 및 논문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장 학위수여 및 논문공표

- 제115조 (학위수여) ① 학위는 과정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시험에 통과하고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주전공과 융합전공을 동시에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개정 2022. 2. 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6.15.>
 - ③ 타 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Double degree) 또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시행세칙 제7장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서 정한다.
- 제116조 (학위종류) 대학원에서는 학과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융합의 성격을 가진 학과의 경우 세부전공별로 학위를 각각 수여할 수 있다.
- 제117조 (학위수여 자격) ①제37조(과정별 수료 학점수)의 각 학위 과정별 수료학

점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을 가진 다.<개정 2021. 6. 15. 2024. 3. 26.>

- 1. 석사학위
- 가.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 나.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라. 학위청구논문이 본심사에서 통과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 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요건을 충족한 자
- 마. 대학원에서 개설한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 박사학위
- 가.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 나.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라. 학위청구논문이 본심사에서 통과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대학원에서 개설한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제118조 (학위수여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격을 심의하고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19조 (학위수여 시기) 대학원의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매년 2월과 8월 중에 행한다.
- 제120조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의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제117조(학위수여 자격)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 제121조 (통합과정 전환자의 박사학위 수여)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허가할 수 있으며, 통합과정 전환자로서 제117조(학위수여 자격)의 박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18장 대학원전문연구요원

- 제122조 (자격)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대학원에 소속된 전문 연구요원의 자격은 대학원 자연계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전문연구요원 추천대상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제123조 (임용) ① 전문 연구요원은 박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매학기 초에 임용한다.
 - ②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24조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 소속이며 해당 학과장의 관리감독을 받

- 으면서 연구활동에 종사한다.
- ② 해당 학과장은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며, 연구요원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임용기간 만료 15일 전에 연구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해당 학과장은 출근부를 비치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5조 (자격상실) 전문연구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복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상실되며,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에 통보하다
- 제126조 (보수) 전문연구요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장 우수학생포상

- **제127조** (자격) 포상은 총장상과 대학원장상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장상 : 국제공인학술지 및 이에 준하는 논문을 게재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로 한다.
 - 2. 대학원장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 제128조 (논문제출) 이 포상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 추천서, 해당논문, 논 문요약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9조** (심사) 대학원장은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준하여 연구업적을 심사하고 순위를 정한다.
- **제130조** (선발인원) 대학원위원회는 각 계열의 학위수여예정자 5%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2. 8. 31.>
- **제131조** (시상) 선발된 우수학생에게는 학위수여시 상패 및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하다.

제20장 학생상벌

- 제132조 (적용범위) 「대학원 통합학칙」제55조 및 제56조에 의거한 일반대학원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포상 및 징계 절차와 시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33조 (위원회)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134조** (비밀유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포상 및 징계 회의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5조** (포상의 대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학생

- 2.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 및 효행을 한 학생
- 3.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4.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5. 학교 및 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제고한 학생
- 6. 학생자치 활동에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공로를 남긴 학생
- ② 학업성적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학생에 대한 포상은 본 시행세칙 제19 장 우수학생포상에 따른다.
- 제136조 (포상의 절차) 학생을 포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 1. 공적조서
 - 2.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본교의 소속 기관장 추천서<개정 2022, 12, 13.>
- 제137조 (징계의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은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 1. 시험 및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학생
 -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3. 학내에서 절도, 성희롱(성폭력),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 4. 교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 유출, 파괴, 변경 행위를 한 학생
 - 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학생
 - 6. 기타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제138조 (징계의 절차)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학생에게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1. 사건 경위서
 - 2. 본인의 진술서
 - 3.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의견서
- 제139조 (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해당학기 이내, 유기정학은 90일 이내, 무기정학은 90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 및 상담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봉사명령 및 상담이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 제140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는다.
 - ② 근신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처벌 받은 날

- 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 ④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제141조 (징계의 해제) 무기정학중인 학생이 개전의 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징계해제 건의 및 지도결과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제의로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 **제142조** (통보) 대학원장은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관련 부서 및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3조** (재심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생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4조** (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학생상벌 관련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1장 학과간 협동과정

- 제145조 (설치 요건) ① 「대학원 통합학칙」제18조에 규정된 학과간 협동과정(이 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 독립성, 기존 학과(부), 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
 - 2.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해당 분야 교수, 공간, 시설, 행정담당인력 등학과설립 요건 충족
 - 3. 교육부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등의 법령 준수
 - ② 대학원과정 내에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협동과정)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유사한 세부전공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제146조 (운영원칙) ① 협동과정의 교육. 연구 및 운영은 2개 이상의 다른 학문분 야 교수들이 협동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동과정의 학과의 명칭은 '전공'으로 기재한다.
 - ③ 학문분야에 따라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
- 제147조 (신청 및 승인) ① 협동과정의 설치는 참여 학과간 협의를 거쳐 참여학과 의 장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동과정의 설치를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추가 할 수 있다.
- **제148조** (주임교수) ① 주임교수는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협동과정 학과의 운영은 주임교수가 관장하며, 주임교수의 직무는 본 시행세칙 제13장 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 따른다.
- 제149조 (학과 폐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조건과

- 기한을 정하여 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 1. 참여교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학과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학과 설치 신청시 제출된 설치 요건 및 기타 운영상황 등을 참작하여 학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최근 6개 학기 동안 신입생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4. 최근 6개 학기 평균 재학생수가 3명 미만인 경우
- **제150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간 협동과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통합학칙을 준용한다.

제22장 융합전공

- **제151조** (설치 요건) ① 「대학원 통합학칙」제18조의2에 규정된 융합전공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 2. 20.>
 - 1.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학문 분야로 별도 교육과정 설계
 - 2. 전공 운영에 필요한 해당 분야 교수, 공간, 시설, 행정담당인력 등 학과설립 요건 충족
 - 3. 교육부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등의 법령 준수
 - ② 대학원과정 내에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3. 2. 20.>
- 제152조 (운영 요건) ① 융합전공의 교육, 연구 및 운영은 2개 이상의 참여학과(협동과정 포함)의 교수들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 2. 20.>
 - ② 융합전공의 학과의 명칭은 '융합전공'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 2, 20.>
- 제153조 (신청 및 승인) ① 융합전공의 설치는 개설 신청일 기준 본교 일반대학원 의 참여교수로 구성되는 융합전공 운영위원회의 장이 소속된 학과에서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신설 2023. 2. 20.>
 - ② 융합전공의 설치를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0.>
- 제154조 (주임교수) ① 융합전공의 운영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주임교수를 두고,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23. 2. 20.>
 - ②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하며, 주임교수의 직무는 본 시행세칙 제13장 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 따른다.<신설 2023. 2. 20.>
- 제155조 (학생의 소속)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소속은 원 소속학과(전공)

-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 소속학과(전공)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3. 2. 20.>
- ② 원 소속학과(전공) 이수포기의 절차는 전과에 준한다.<신설 2023. 2. 20.>
- 제156조 (자격 및 선발) ①융합전공의 지원자격은 1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이고, 6학점 이상 취득(취득예정 포함)한 융합전공 참여학과(전공) 소속 학생으로 제한하며, 신청 학위과정은 이수 중 학위과정과 동일하다.<신설 2023, 2, 20.>
 - ② 융합전공 지원자는 원 소속학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에 제출하고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 2. 20.>
- **제157조** (교과 과정) 융합전공의 교과과정은 학문 분야 간 융·복합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20.>
- 제158조 (학사 관리) ①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되기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의 전 공교과목은 융합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2. 20.> ②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원 소속학과(전공) 및 융합전공을 모두 이 수하는 경우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나열된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3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6학점 이내에서 소속 학과(전공)의 전 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2. 20.>
- 제159조 (이수전공의 포기) ①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 소속학과(전 공) 및 융합전공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신설 2023. 2. 20.>
 - ② 원 소속학과(전공)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직전 학기까지 원소속학과(전공) 및 융합전공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일내에 포기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20.>
 - ③ 원 소속학과(전공) 포기 시 융합전공에서는 자격시험, 학위논문 심사 등 학위 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20.>
- 제160조 (평가) ① 대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융합전공 운영성과를 점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융합전공 유지, 폐지 및 일반학과 전환 등 운영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2. 20.>
 - ② 융합전공의 운영이 저조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여 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3. 2. 20.>

제23장 대학원장학금

제161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 의한다.

- 제162조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자
 - 2. 입학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3.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4.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5. 기타 총장 및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63조 (가계곤란학생 장학 지급기준) 신입생장학금 및 특별장학금, 기타장학금은 학생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 11. 16.>
- 제164조 (신입생장학금) 입학성적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 11. 16.>
 - 1. 학비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2. 인하비전장학금 : 입학성적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3. 외국인장학금 :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제165조 (특별장학금)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 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조교장학금 : 교수의 교육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2. 학생회간부장학금 :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학생회 간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3. 재직자장학금 : 대학원 입학 시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4. 공로장학금 : 본 대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학생(교내외 활동에 공헌이 크거나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6. 연구장학금 : 연구비 수혜실적이 우수한 교수의 지도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7. 전문간호사과정장학금 : 전문간호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8. 기금장학금 :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 9. 인하프로그램장학금 : 학업역량, 사회봉사역량, 국제화역량, 연구역량, 기타역량분야에서 성과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 12. 17.>
- 10. 창업꿈나무장학금 : 창업을 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6.15.>
- 11. 교직원자녀 장학금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신설 2022, 2, 28.>
- 제166조 (기타장학금)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 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67조 (교외장학금)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기타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68조** (선발시기) 장학생은 매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169조 (교외장학생 선정) ① 출연기관에서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의뢰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생지원처장이 결정한다.
 - ② 출연기관에서 학과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장학생수의 학과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지원처장이 대상 학과를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 제170조 (신청절차) 장학금 수혜희망자는 신입생은 대학원, 재학생은 학생지원처에 서 지정한 기한 내에 장학금 신청원 및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1조 (이중수혜금지) 각 장학금 규정에 별도로 지정된 경우 이외에는 장학금은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 제172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외장학금은 출연기관이 정한 시기와 방법을 따라 지급한다.
- 제173조 (지급제한) ① 장학생이 각 장학금지급내규에 명시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혜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충족했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회복한다.
 - ②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1. 자퇴한 경우
 - 2. 제적된 경우
 - 3. 각 장학금지급내규에 정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4.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 5. 지도교수가 장학금 수혜자격 박탈을 요청한 경우

- ③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 1. 장학금의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2.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24장 외국인학생

- 제174조 (정의) "외국인학생"이라 함은 본인의 국적이 외국인 자를 말한다.
- **제175조** (정원외 입학)「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 제7항에 해당하고 특별히 우수 한 외국인학생을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다.
- 제176조 (지원자격) 외국학생은 입학전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원 통합학칙」제5조의 학력
 - 2.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공인영어평가시험 성적
 - 3. 기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기재된 요건
- 제177조 (입학전형서류)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2. 이력서(소정양식)
 - 3. 성적증명서
 -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5. 추천서 1부(출신학교 지도교수)
 - 6. 자기소개서
 - 7. 사진
 - 8. 신분증(여권) 사본
 - 9.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공인영어평가시험(TOEFL, IELTS, TEPS, TOEIC) 성적증명서
 - 10.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신원보증서
 - 11. 작품 또는 성과물(예ㆍ체능계에 한함)
 - 12. 학업수행계획서
 - 13. 학력조회동의서
 - 14.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제178조 (입학전형) ①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학과입학심사와 대학원위원회입학심사로 구분한다. 다만, 정부기관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② 학과입학심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학과의 주임교수는 외국인 지원자의 성적·경력·추천 내용 등을 심사 하여 학과 재적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주임교수는 학과심사에서 통과된 외국인 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합격을 제청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 심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합격이 제청된 자의 수와 입학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수를 참작하여 학과별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 2.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합격이 제청된 자에 대하여 성적, 경력, 추천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확정한다.
- 제179조 (등록금) 외국인학생은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행 세칙 제22장 대학원장학금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0조** (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① 외국인학생은 졸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PBT, IBT))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 ② 단, 일부과정(예체능계 및 이공(의학)계 학과 입학생,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 1. 한국어능력시험(TOPIK(PBT, IBT)) 4급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 통과(P)를 취득하여야 한다.
 - 2. 입학 시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며, 제95조(합격인정)의 자격시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별표2]의 학과(전공) 중 이중언어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PBT, IBT)) 3급 이상 또는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과정(중급)에서 통과(P)를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26.>
 - ④ 위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등 천재지변을 사유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졸업자격 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4. 3. 26.>
 - ⑤ 본교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3. 26.>
- 제181조 (외국인 등록) 입국이 완료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 리소에 외국인 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제182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 1. 한 학기 30일이상 장기결석한 자
 - 2.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자
 - 3. 학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자
- **제183조** (휴학) ① 외국인 학생의 휴학 기간은 1회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통산 석사과정 4개 학기, 박사과정 6개 학기, 통합과정은 8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불허한다.<개정 2022. 8.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시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31.>
- ③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개정 2022, 8, 31.>
- ④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4조**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학생이 학업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체류연장신청서 1부
 - 2. 여권 원본
 - 3. 외국인등록증 원본
 - 4. 장학확인서 원본 1부
 - 5.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6. 등록예정확인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원본 1부
 - 7.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8. 은행예금잔액증명서 원본 1부
- 제185조 (보험)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학생은 아래의 보험중 하나를 가입해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
 - 2. 본교 지정 유학생보험
 - 3. 국내 타보험 상품
 - 4. 외국 타보험 상품
- **제186조** (준용규정) 외국인학생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학원 통합학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한다.

제25장 박사과정 학과 · 전공 신설 및 운영기준

- 제187조 (박사과정 참여교원) 대학원에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8>
- 제188조 (박사과정 강의 기준) 신설 및 운영하려는 박사과정 학과 또는 전공의 전체 개설 학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전임교원이 강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8>
- 제189조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 박사과정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 및 운영할 때에는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2분의1 이상이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8>
 - 1. 인문·사회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2. 예·체능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3.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부 칙(2020, 8,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이 학칙시행세칙의 시행으로 기존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등록에 관한 규정, 교과과정 및 수강에 관한 규정,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 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 자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대학원전문연구요원규정, 우수학생포상규정,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대학원장학금 규정,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전환에 관한 내규.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4.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1조)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5.)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5조 제1항, 제114조, 제116조, 제154조)은 2021년 6 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제95조 제1항 및 제116조의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는 2021학 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 대체는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9.)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 제4항, 제43조)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다.
- 제2조 (적용) ① 제3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대학원 재적중인 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졸업까지 본 대학원 강의 및 학생지도를 담당할 수없다.
 - ② 비전임교원이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적중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졸업까지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 제3조 (경과조치) ① 제43조 제3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현장연구

및 현장실무 교과목은 이 개정세칙 제43조 제3항의 요건을 적용한다. 단, 국 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세칙 제43조 제4항을 따른다.

부 칙(2021, 12, 20.)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2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114조 제1항, [별표1],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제42조 제2항의 수업연한 단축기준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다.
 - ② 제1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서식 학위기는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2,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4조 제1항, 제154조 제11호, 별지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 서식)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13.)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8조 제1항, 제68조의2, 제94조 제2항, 제3항, 제8항) 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68조 제1항, 제68조의 2는 2022학년 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제94조 제3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8. 3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6조 제3항, 제34조의 2, 제55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제101조 제3항, 제129조, 제172조)은 2022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16.)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3조, 제41조, 제94조 제7항, 제152조, 제153조 제1호 및 제2호)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94조 제7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제41조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13.)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34조,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6항, 제68조의2, 제135 조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제34조 제3항 수강학점 제한 폐지 부분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수강학점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부 칙(2023. 2. 2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70조 제3항, 제151조 내지 제160조)은 2023 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14조)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8.)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3조 제2항, 제34조, 제70조, 제95조 제6항, 제187조 내지 189조)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23조 제2항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대체 업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3. 26.)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8조, 제21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5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3조의 2, 제100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1조, 제180조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제34조 제1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増 張	11	연구업적	이정기	[주
=1	1.4	1' H 7	1'0'	יוו

평가계열 평가항목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능계열	의학계열
논문			
국내공인학술지 ¹⁾	_	15(20)	_
국제공인학술지 ²⁾	- SCI(E) : 30 / SSCI·A&HCI : 60 - 질적평가에 따라 최대 5∼30점 추		
국제수준학술지 ³⁾	15 15		15
학술활동			
창작발표회/전시회 ⁴⁾	20 20		_
학술상 수상 ⁵⁾	20	20	20

※ 각주 해설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국내공인학술지로 인정한다.

구분	인문·사회계열/예능계열	
등재학술지	20점	
등재후보학술지	15점	

- 2)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업적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SCI(E) 30점, SSCI 및 A&HCI 60점
 - 2. 초록만이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중 Impact Factor (IF) 상위 50% 이내학술지에 전문이 게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점 수			
下七	IF 1%이내	1% <if≤5%< td=""><td>5%<if≤20%< td=""><td>20%<if≤50%< td=""></if≤50%<></td></if≤20%<></td></if≤5%<>	5% <if≤20%< td=""><td>20%<if≤50%< td=""></if≤50%<></td></if≤20%<>	20% <if≤50%< td=""></if≤50%<>
SCIE	60	50	40	35
SSCI, A&HCI	90	80	70	65

- ※ IF 상위학술지 선정은 WoS(Web of Science)의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분야별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 ※ IF는 논문 최종 발행년도 직전년도에 공시된 IF를 적용한다.
- 4. 한국연구재단에서 SCIE급으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 분야 학술대회지에 게재된 논문(초록, 포스터, 워크숍 제외)의 경우 SCIE급으로 인정하며, IF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한다.

인정IF	배점
1	10
2	15
3	30
4	45

- 3) SCOPUS(article 등 한국연구재단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정)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인문사회/예능계열의 경우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중 연간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 분포가 5개국 이상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는 15점을 인정한다. 다만, 초록만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4) 창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발표했을 경우에만 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미술과 디자인분야의 경우 발표회의 형태에 따라 공인된 개인전과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 및 디자인행사(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이코그라다, 아시아디자인학회 등) 출품, 공공미술 창작품(지하철 미술작품 등), 국제기관 및 단체디자인프로젝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디자인프로젝트는 20점을 인정한다.
 - 2. 음악 및 무용 분야의 경우 국내외 공인 독창회, 독주회, 국내외 공인 연주회의 지휘 또는 창작곡의 초연, 개인창작연구발표회는 20점을 인정한다.
 - 3. 건축학 분야의 창작품에 대하여는 국제 공인된(3개국 이상 참여) 업적으로서 현상설계 당선작, 초대전·기획전 출품은 20점을 인정한다.
 - 4. 문예 및 미학 분야의 창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제도가 있는 국내·외 저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 소설집, 희곡집, 평론집의 경우 20점을 인정한다.
 - 5. 창작발표회/전시회 의상디자인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 국제유명 국공립 미술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초대개인전, 국내외 공인 개인전 및 일반화랑 초대개인전 그리고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행사(비엔 날레, 트리엔날레 등) 출품은 20점을 인정한다. 공모전의 경우 국제공모전 입상이상은 20점. 공모전이 전시를 겸하는 경우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 전시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 6. 연극·영화·방송 분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 국외 제작사의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 국제공인 연극·영화·방송 제 초청/ 출품 작품 연출, 주연, 희곡, 시나리오의 경우 20점을 인정한다.
- 5) 국제학회/국가차원의 학술상과 창작상은 20점을 인정한다. 단, 그 외 국내학회/교내차원의 학술상과 창작상 또는 국내·외 포스터 발표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6.>

【별표 2】석사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설치·운영 현황<신설 2024. 3. 26.>

학과	수업연한	신설일자
글로벌간호학과	1년	2024학년도 2학기
AI·데이터법정책학과	1년	2024학년도 2학기
글로벌운동과학전공	1년	2024학년도 2학기

【별지 1】

학위번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학과)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석사 제 호

【별지 1-2】

학위번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학과 및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석사 제 호

【별지 2】

학위번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학과)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박사 제 호

【별지 2-2】

학위번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학과 및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박사 제 호

【별지 3】

Inha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PERTAINING TO THAT DEGREE.

AWARDED AT INCHEON, KOREA 학위수여일자

_____ 대학원장 서명 _____ 총장 서명 DEAN PRESIDENT 【별지 3-2】

Inha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AND

융합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PERTAINING TO THAT DEGREE.

AWARDED AT INCHEON, KOREA 학위수여일자

______ 대학원장 서명 ______ 총장 서명 _____ DEAN PRESIDENT

【별지	4)
-----	----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생

학문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 위 사람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에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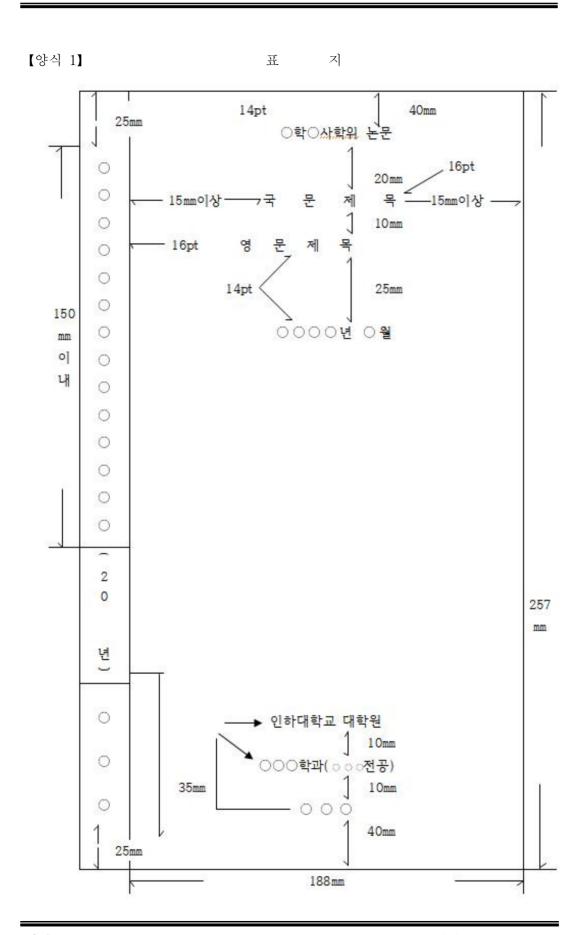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 ○○○ 박사학위를 수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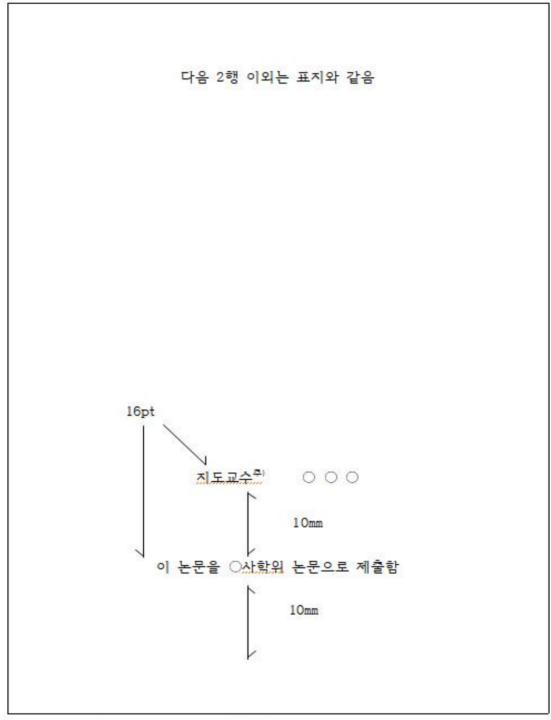
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 장

학위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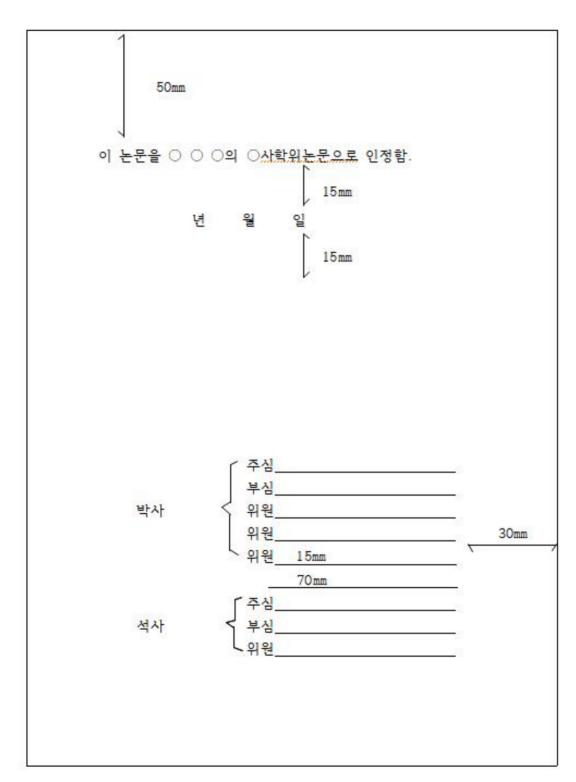


【양식 2】 속 표 지



주) 공동지도교수가 있는 경우 「공동지도교수 ○○○ 공동지도교수 ○○○」로 표기

【양식 3】 인 정 서



【양식 4】

영문속 표지(예시)

Four-Quasi-Particle Random Phase Approximation

bу

Sung-Ro Yoon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INHA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Physics February 1993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1	2020. 12. 17	16		31	
2	2021. 04. 15	17		32	
3	2021. 06. 15	18		33	
4	2021. 09. 09	19		34	
5	2021. 12. 20	20		35	
6	2022. 02. 28	21		36	
7	2022. 05. 13	22		37	
8	2022. 08. 31	23		38	
9	2022. 11. 16	24		39	
10	2022. 12. 13	25		40	
11	2023. 02. 20	26		41	
12	2023. 06. 16	27		42	
13	2023. 12. 08	28		43	
14	2024. 03. 26	29		44	
15		30		45	